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김주영 · 박 정
한민수 · 김태선 · 이해민
안호영 · 이재정 · 조정식
황명선 · 김성희 · 이용우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, 공갈, 횡령,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·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,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·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하고 있음.

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,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.

그런데 「근로기준법」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·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,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·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재산에 「근로기준법」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·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다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근로기준법」 제9조를 위반한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범죄피해재산”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·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· 나. (생 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다. 「근로기준법」 제9조를</u> <u>위반한 죄</u>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